

급경사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2023.05.31.)

□ 목적 및 내용

○ 급경사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신속한 피해원인 조사 등 현장지원*

* 「급경사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제3호에 명시됨

○ 정부 및 지자체 급경사지 정비사업, 국가안전대진단, 계측 등 관련 업무 지원

□ 구성 및 운영기간

○ 운영주체 및 주관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행정안전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및 관계기관의 인력지원 요청 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이 1년 임기로 현장지원단 위촉·운영

○ 현장지원단(43명*) : 국내 관련 학회·협회 등에서 지반, 지질, 방재 등 급경사지 분야 전문가 추천을 통해 인력풀 구축

○ 운영기간 : '23.06.01. ~ '24.05.31.(급경사지 등 재해발생 시 수시로 운영)

<현장지원단 자격요건>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원*으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에 한함

a. 급경사지 관련 분야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b. 급경사지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c. 급경사지 관련 분야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d. 급경사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e. 그 밖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는 행안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급경사지 등 지원분야 유일한 등록 기관으로 협의회 가동 시 현장지원단 활동을 위해 협회 회원 자격이 필요

붙임 : 급경사지 등 재해 발생 시 응소절차 1부. 끝.

붙임**급경사지 등 재해발생 시 응소절차**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상황전파 * 대상자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내 용 : 급경사지 피해발생 관련 상황
---	-------	---



2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급경사지 피해 발생 시 상황접수(행정안전부 → 협회) * 내 용 : 피해발생 일시, 장소 및 피해경위 등
---	----------------	---



3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급경사지 피해 발생 시 응소유무 확인 요청 * 피해발생 권역 현장지원단 대상 문자전송 또는 유선 통화
---	----------------	---



4	현장지원단 (전문가)	급경사지 피해 현장 응소 가능자 보고(문자전송 / 유선통화) *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 044-868-5680 / 010-8624-2347
---	----------------	--



5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	급경사지 현장지원단 파견계획 수립 및 통보 * 조사현장, 일시, 현장지원단 편성, 관계기관 협조사항 등 * 통보대상 : 행정안전부, 현장지원단(전문가), 관계기관 등
---	----------------	--